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5.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1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5.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가. 제안이유

-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용품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법령기준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를 “활성화계획”으로 변경(안 제5조)
-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작·배포(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자전거 안전용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구 조례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상위법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제5조제2항 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제2항의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제16조에서는 자전거 이용 구민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반사 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2015년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구에서는 자전거 교통사고 337건의 발생으로 4명이 사망하고 366명이 부상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근본적인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시설의 환경 개선, 교육 및 홍보, 자전거 수요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225 호 |
|----------|---------|

제출연월일 : 2017.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용품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 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된 조문 정비(안 제5조, 안 제9조)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4)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7.3.16. ~ 4.5.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동 조례 개정(안) 제16조 제2항
2. 비용추계 기준 : 10,000천원 (자전거 부착 반사스티커 제작)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10,000매 × 1,000원 = 10,000천원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0 | 0 | 0 | 0 | 0 | 0 |
| 세출 | 반사스티커제작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 ○ | | | | | | |
| | 소계(b)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 총 비용(a-b)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
| 시비 | 국비 | | | | | | |
| | 지방세수입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구비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기타 | | | | | | | |
| 합계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6. 추가의견 : 2017년도에는 교통행정과 예산(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를 활용하여 10,000천원 집행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별도 예산확보 예정

7.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최우혁 |
| 연락처 | 02-2670-388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자전거이용의”를 “자전거 이용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정비계획”을 각각 “활성화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전거이용)”을 “(자전거 이용)”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을 “(자전거주차장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을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전거이용 시”를 “자전거 이용 시”로, “권유하고 그 밖에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권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반사 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자전거 보험)”을 “(자전거 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전거이용”을 “자전거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u>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u>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u>(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u> 2. <u>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와 시책방향</u> 3. <u>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u> 4. <u>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u> 5. <u>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과 개선 방향</u> | <p>제1조(목적) ----- 「<u>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p> <p>-----</p> <p>-----</p> <p><u>자전거 이용의</u>-----</p> <p>-----.</p> <p>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p> <p>「<u>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p> <p>----- <u>활성화계획</u></p> <p>(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p> <p>-----.</p> <p>〈삭 제〉</p> |

6.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

7. 그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③----- 활성화계획-----

-----.

④-----
-- 자전거 이용 -----

----- 활성화계획-----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①구청장은-----

-----.

<삭 제>

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후미등 부착을 권유하고 그 밖에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6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 자전거 이용 시

--권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반사 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6조의2(자전거 보험) -----
자전거 이용-----

1. (현행과 같음)
2. -- 밖의 -----
-----.